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

최근 「방위사업법」 제17조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통합소요기획’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는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국방 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상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점을 “선행연구 완료 후”에서 “소요가 결정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기품원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무기체계 시험 등의 활용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근거 및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여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에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서, 군수품과 국·공유재산을 구분하여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 내용을 규정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양여 등 각 행위별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

K-방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4년 국무조정실 주관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함.

수출한 무기체계의 안정적 정비지원을 통해 수출 대상국에 대한 신뢰 구축 및 방산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를 수출허가 면제요건으로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을 “소요가 결정된 경우”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을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군수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대부 또는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의4(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①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제68조제7항제4호 중 “물품(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을 허가일로부터 2년”을 “물품을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또는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 및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00000호, 2026. 0. 0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u>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u>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 <u>소요가 결정된 경우</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u>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u>) ① 법 제32조의2에 따른 <u>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u>	제37조의2(<u>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등</u>) ① ----- -- <u>군수품</u>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u>	③ <u>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대부 또는 양</u>

양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신 설>

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의3(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7조의4(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①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

제68조(수출허가 등) ① ~ ⑥ (생략) ⑦ (생략) 1 ~ 3. (생략) 4. 법 제5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u>동일한 물품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을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u> 5. (생략)	<u>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u> 제68조(수출허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 ----- -----<u>동일한 물품을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또는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단,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 및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u>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13